

[별첨4]

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

1. 편의제공 대상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반기 정규직 채용 응시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2.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 안내

- **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유형·정도, 편의제공 신청 사항 등을 작성하여 업로드**해야 함
 - 신청서(6쪽 참조) 작성하여 입사지원서 내 ‘첨부 서류’ 업로드
 - **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대상이 되면 추가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류 등을 제출**, 이후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SMS 등 연락)
 - ※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외 의사소견서 등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(2~5쪽 참조)

3.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- ‘(참고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서류’를 통해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필요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
 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증빙서류 제출 시 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**
- 편의제공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☎ 070-4896-0803으로 문의

(참고)

◆ 장애유형별 필기·면접 심사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 서류

1. 필기시험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추가 증빙 서류(각1부)	비고	
지체 장애	상지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▶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 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-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▶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▶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 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의사 진단서 (원본 스캔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-	
시각 장애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		기존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) ▶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 	의사 진단서 (원본 스캔)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	-	기존 3급 1,2호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추가 증빙 서류(각1부)	비고
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) ▶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일본 스캔)	기존 4급 2호
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
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-	기존 4.5급 1호
	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의사 진단서 (일본 스캔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▶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5급 2호, 6급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▶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▶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후안내	
	임신부	▶ 높낮이조절책상 ▶ 시험 중 화장실 사용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(일본 스캔)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▶ 시험 중 화장실 사용·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 (일본 스캔)	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
 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
 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화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2. 인성검사(심사직 4급만 해당)
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제공 내용	추가 증빙 서류(각1부)	비고
지체 장애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1~3급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 (원본 스캔)	기존 4~6급
시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)	의사 진단서 (원본 스캔)	기존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)	의사 진단서 (원본 스캔)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▶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4,5급 1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 진단서 (원본 스캔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화·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3. 면접심사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
지체 장애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휠체어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 장애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
시각 장애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담도우미 지원 ▶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청각 장애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지원 ▶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▶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▶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▶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화·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

○ 반드시 '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사항'을 숙지하신 후에 신청서 작성 및
입사지원서 內 '첨부서류'로 업로드 바랍니다.

1. 인적사항

지원분야	성명	연락처 (휴대전화)	장애유형(정도)

2. 편의제공 신청 내용

- '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 서류'를 참고하여,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 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
- 편의제공이 필요한 전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

편의제공 전형	신 청 (☑ 표시)	받고자하는 편의	편의제공 필요성(구체적으로 기재)
필기시험	<input type="checkbox"/>		
인성검사 (심사직 4급만 해당)	<input type="checkbox"/>		
면접심사	<input type="checkbox"/>		